

제 504 조에 의거한 권리

귀하는 제 504 조에 의거한 권리에 대해 교육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본 문서는 제 504 조에 의거한 귀하 및 귀 자녀의 권리에 관한 안내이자, 귀하가 교육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.

제 504 조란 ?

일반적으로 '제 504 조'라고 하는 1973 년 재활법 제 504 조는 장애를 기초로 한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. 제 504 조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주요 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.

귀 자녀의 교육

귀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
- 무상 및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
-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참석하고 그 혜택을 누릴 권리
- 교육구가 제공하는 학업 외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
- 적절한 수준으로 최대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
-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러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
- 귀 자녀가 동등한 기회 속에 학교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및/또는 이와 관련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- 장애가 없는 자녀들의 부모들에게도 부과되는 것과 같은 비용 책임은 지되, 교육 및 이와 관련한 지원 및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받을 권리
- 필요한 경우, 특수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

귀 자녀의 학과 성적

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
- 자녀의 학과 성적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.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러한 기록 열람이 곤란한 경우, 무료로 그러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- 성적이 틀렸거나 잘못된 경우, 또는 해당 성적이 귀 자녀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, 귀 자녀의 학과 성적 정정을 교육구에 요구할 권리. 교육구가 이 요청을 거절할 경우, 귀하는 공정한 청문회를

요구함으로써 해당 거절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.

- 귀 자녀의 학과 성적에 대해 설명과 해설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얻을 권리

제 504 조의 절차

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귀하의 자녀가 제 504 조의 적용 대상인지를 결정하기에 앞서,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.

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.

- 교육구가 귀 자녀에 대한 검증, 평가 및 분반과 관련한 일련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안내를 받을 권리
- 귀 자녀를 알고, 평가 정보의 의의와 가능한 분반 선택권을 아는 구성원을 포함하는 소위 '504 팀'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분반 결정과 그들의 평가를 받을 권리
- 적성 및 성취도 검사, 교사 추천, 신체적 조건, 진료 기록 및 부모의 관찰 등과 같은 일련의 자료를 기초로 한 평가 결정을 받을 권리
- 귀 자녀의 최초 분반 및 평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
귀하의 자녀가 제 504 조의 적용 대상인 경우, 귀하의 자녀는 본인의 분반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기 전에 재평가를 포함하여 주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.

교육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
제 504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 자녀에 대한 평가, 교육 프로그램, 또는 분반과 관련한 교육구의 결정에 동의하는 않는 경우, 귀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청문회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귀하 및 귀 자녀는 청문회에 참가하고 귀하를 대변할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집니다. 청문회 요청 및 기타 관련 우려 사항은 교육구의 제 504 조 담당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. 담당자 연락처:

Tami Petrina, Executive Director Student Special Services
502 Fourth Street NE, Auburn WA 98002
253-931-4927 or tpetrina@auburn.wednet.edu

귀하는 미국 교육부 인권사무소 (OCR) 또는 연방 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,

OCR 로의 불만 제기는 귀하가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**180**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지역 사무소 주소 :

915 Second Ave, Room 3310, Seattle, WA 98174-1099.

전화: 206-607-1600/TDD: 206-607-1647

홈페이지: www.ed.gov/OCR.